

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도시계획 사업시 자진 이주하여 행정청에 협조한 세입자는 불이익을 받고, 끝까지 남아 이주를 거부한 세입자는 혜택을 받은 사항은 행정의 신뢰성, 세입자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사료됨

- 단, 본 청원의 경우 행정처리가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심판 재결 결과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결결과와 같이 관련 법규를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1. 11. 21 제16차 서울시정책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이외에는 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구 행정행위를 믿고 따르면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는 행정불신현상을 해소하고 구청간의 자진이주 세입자들 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공공주택의 분양권 우선부여 등의 특단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구성 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11		접수년월일	2003. 3. 3
청원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9-1		
	성 명	이달원 외 5인	주민등록 번호	
소개의원	한응용 의원(한나라당, 송파구 제1선거구 건설위원회)			
건명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 사업관련 자진이주자에 대한 보상			
소관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요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동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중 선이주 후보상방식을 약속한 구청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자진 이주한 64세대에 대해 자치구에서는 수차례 서울시에 견의를 하였으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로부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포일(86년 11월 29일) 이전에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이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시·구의 행정을 먼저 믿고 따르면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우려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므로 그들의 잃어버린 생활터전과 재정적 손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자진이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내용의 청원임